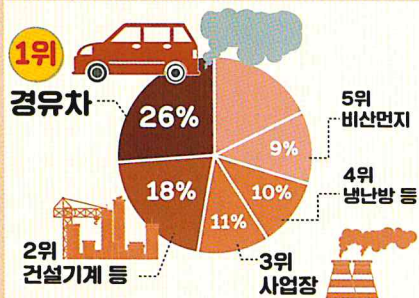


자동차 운행제한 완전 정복 가이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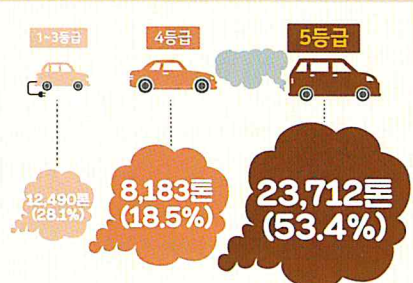
· 4가지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·

STEP 1 | 운행제한 바로알기

· 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하나요? ·



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



등급별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

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대도시
미세먼지의 주 배출원

경유차 배출가스는 1군 발암물질 (WHO 지정)
생활 속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위해도가
매우 높음. 따라서,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
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

STEP 2 | 운행제한 구분하기

1 계절관리제 (12월~3월)

·대상지역
서울, 인천, 경기

·대상차량
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
(단속 제외: 영업용과 화물차, 장치미개발차,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)

·단속기간
2020년 2월~3월 (토·일요일·공휴일 미시행)
※법, 조례 개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·단속시간
06시~21시

·과태료
1일 10만원



2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·대상지역
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(전국 대상)

·대상차량
배출가스 5등급 차량

·단속기간
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(토·일요일·공휴일 미시행)

·단속시간
06시~21시

·과태료
1일 10만원



3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

·대상지역
한양도성 내부 (종로구, 중구 16.7km²)

·대상차량
배출가스 5등급 차량

·단속기간
2019년 12월 1일부터 (토·일요일·공휴일 시행)

·단속시간
06시~21시

·과태료
1일 25만원



4 수도권 노후 경유차

·대상지역
서울, 인천·경기 (대기관리권역)

·대상차량
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*

*종합검사 부적합,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 등

·단속기간
365일 (시행 중)

·과태료
월 20만원



STEP 3 | 저공해조치 신청하기



저공해조치 하기

매연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엔진 개조, 조기폐차 등



저공해조치 문의

·수도권 한국자동차환경협회(1544-0907),
수도권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
·수도권 외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 환경 관련 부서

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방법

2020년 1월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
emissiongrade.mecar.or.kr

신청 문의 서울, 인천, 경기 민원 콜센터 (지역번호+120)

※신청 차량은 20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에서 제외